

【 22 】 양주군중수도운영조례안

제출년월일 2002. 12. 11.

제 출 자 양 주 군 수

1. 제정이유

중수도 설치 대상·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중수도 설치를 권장하고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물 절약과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중수도의 설치대상을 정함(안 제3조)
- 나. 중수도 시공업자의 자격을 정함(안 제4조)
- 다. 중수도의 용도를 정함(안 제7조)
- 라. 수질검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마. 요금의 감면기준 및 감면기간을 정함(안 제10조)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중수도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1조 및 수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의 설치·관리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돗물”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공급하는 원수 또는 정수를 말한다.
2.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전부를 말한다.
3. “중수”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물을 말한다.
4. “중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용도별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얻기 위해 필요한 처리 시설의 전부를 말한다.
5. “송·배수시설”이라 함은 중수를 중수처리시설로부터 이용설비까지 송·배수 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전부를 말한다.
6. “이용설비”라 함은 저수조, 수세식변기, 살수전 등 중수가 사용되는 설비의 전부를 말한다.

제3조(설치대상) ①수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당해지역의 물공급 사정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중수도시공업자의 자격) 중수도시공업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별표2의 면허기준중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상·하수설비공사업의 면허소지자
2.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2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한 자

제5조(설치통보 및 확인) ①군수는 수도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중수도 설치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수도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적정여부를 검토후 중수도설치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중수도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영중지
3. 소유자 및 관리자 변경

제6조(관리) ①중수도의 관리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그가 임명하는 자가 관리한다.

②중수도를 설치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일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것
3. 이용 설비에는 반드시 중수도 사용이란 표식을 설치하여 오용을 방지할 것
4. 중수도의 운영기록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할 것

③중수도의 관리를 소홀히 해서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7조(용도) 중수도는 수세식 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수질기준) 중수도를 설치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의 수질이 수도법시행규칙 제3조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용도 기준이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중수도를 설치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하여 제출한 수질 기준에 의한다.

제9조(수질검사) ①중수도를 설치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잔류염소, 외관, 탁도, 색도, 냄새, 수소이온농도(pH): 매분기 1회이상 실시
2. 대장균군,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및 화학적산소요구량(COD) :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실시

②수질검사에 따른 채수장소는 사용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저수조의 출구로 한다.

제10조(요금감면) ①군수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소유자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가정용에 대해서는 중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0퍼센트
2.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에 대해서는 중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

③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중수도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1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중수도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량은 중수도 계량기에 의해 측정된 수량을 적용한다.

⑤군수는 매월 정기적으로 중수도 계량기에 기록된 사용수량을 검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고지서 발급 시 감면 조치하도록 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요금감면에 대하여 이 조례에 별도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양주군수도급수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제11조(검침) 군수는 매월 또는 격월 정례 기간 중에 중수도 계량기에 기록된 사용수량을 검침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검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계량기의 설치) ①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 사용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고장으로 인한 보수 시에는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 계량기 파손 또는 고장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수량 인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수도 사용수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계량기의 조작 또는 고의로 손상시키는 경우 해당기간중 중수도사용수량
4.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능한 경우

제14조(과태료) 군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한 자 및 부정시설물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양주군수도급수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개정)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3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第33編 國土開發·都市 第3章 都市 水道法

②水道事業者는 水道事業을 경영함에 있어 합리적인 水道料金體系를 확립하고 水道施設의 整備·확충 및 水道에 관한 技術向上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9條 (營利行爲禁止등) ①水道事業者외의 者는 수돗물을 機具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販賣할 수 없다. <改正 94·8·3>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 機具등의 撤去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거나 水道事業者로 하여금 수돗물의 供給을 증기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4·8·3, 97·8·28>

第10條 削除 <97·8·28>

第11條 (中水道)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물을 多量으로 사용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中水道를 設置·관리하도록 勸獎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水道의 施設基準·유지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4·8·3, 97·8·28>

第11條의2 (節水設備의 設置) ①建築主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 및 施設을 建築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돗물의 節約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節水設備를 設置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節水設備의 종류·設備基準등 節水設備에 관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7·8·28]

第2章 一般水道事業

第12條 (一般水道事業의 認可) ①一般水道事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설치하는 廣域上水道를 제외한 廣域上水道(淨水施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의, 建設交通部長官이 認可하는 廣域上水道의 淨水施設·地方自治團體가 設置하는 廣域上水道 및 地方上水道의 경우에는 環境部長官의, 簡易上水道의 경우에는 市·道知事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認可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12·27, 94·8·3, 97·8·28>

②環境部長官 또는 建設交通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로 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建設交通部長官이 淨水施設이 포함된 廣域上水道에 관하여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 認可한 때에는 당해 淨水施設 設置·운영에 대한 環境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4·8·3, 97·8·28>

③環境部長官,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이하 “認可官廳”이라 한다)는

第33編 國土開發·都市 第3章 都市 수도법시행령

게 공급하는 수도사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수도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 2. 취수한 원수 또는 정수를 일반의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취수하는 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제15조 (중수도의 설치대상등) ①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인 시설”이라 함은 건축연면적이 6만제곱미터이상인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9·29>

-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중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
-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시설중 교도소·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 5. 기타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방법등에 관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2 (절수설비의 설치대상)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9·29>

-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2. 기타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98·2·24]

제15조의3 (빛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 ①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운동장 또는 체육관으로서 지붕면적이 2천400제곱미터이상이고, 관람석 수가 1천400석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지붕면적이 2천400제곱미터이고 관람석 수가 1천400석인 경우를 말한다.

●수도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2·12·15	건설부령	제519호
개정	1995·7·1	환경부령	제13호
	1998·2·28	환경부령	제39호
	1999·1·2	환경부령	제51호
	2001·10·4	환경부령	제114호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의2 (중수도 설치통보 서식)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의 설치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10·4)

제 2 조 (중수도 시설기준)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5·7·1>

1. 사용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등의 용도에 적합한 수질로 재처리할 수 있는 침전지·여과지·소독설비등의 재처리시설
2. 필요한 양의 물을 송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등의 송수시설
3. 필요한 양의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등의 배수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의 시설은 위생 및 안전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 및 가스공급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 (중수도의 수질기준) 중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중수도의 수질을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제 4 조 (중수도 사용수량 산정기준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설치대상 건축물의 사용수량산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시설인 경우에는 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도 또는 동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상수도를 통하여 공급받는 수량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사용수량을 합산한 양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장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폐

양주군중수도운영조례 제정

제정이유

중수도 설치 대상·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중수도 설치를 권장하고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물 절약과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유도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중수도의 설치대상을 정함(안 제3조)
- 나. 중수도 시공업자의 자격을 정함(안 제4조)
- 다. 중수도의 용도를 정함(안 제7조)
- 라. 수질검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마. 요금의 감면기준 및 감면기간을 정함(안 제10조)

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관계법령발췌서

- 수도법 제11조
- 수도법시행령 제15조
- 수도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2002. 10.28~11.16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음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